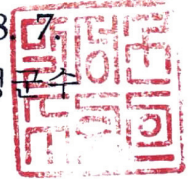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8
----------	------

제출일자 : 2018. 7.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위임
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정의 정비(삭제·신설) 및 용어 수정(안 제2조, 안 제10조)
- 나. 자전거 보험에 관한 일반사항 추가(안 제5조의2)
- 다. 자전거주차장 설치, 관리·운영사항 등 구체화(안 제6조~안 제8조)
- 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규정 신설(안 제8조
의2 ~ 안제8조의3)
- 마.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내용 구체화(안 제8조의4)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의견 있음 / 개선 권고 사항 수용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의견 있음 / 개선 권고 사항 수용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해 입법예고를 생략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함.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시설을”을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로 한다.

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9.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공원, 하천, 공공기관,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그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운영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를 해당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중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을 “제6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으로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3(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공원, 하천, 공공기관,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자전거의 펑크, 림 교정 및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할 경우 그 비용은 무료로 하되, 그 수리 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이용자는 그 부품의 원가를 부담한다.

제8조의4(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 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정비소” 를 “자전거 수리센터”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를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 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7.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u><삭제></u> <u><삭제></u> <u><삭제></u> 4. -----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 5. ~ 7. (현행과 같음) 8.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9.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자전거 이용자 보험) ① ~ ② (생략) <u><신설></u> 제6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하천, 공공기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u><신설></u>	제5조의2(자전거 이용자 보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6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공원, 하천, 공공기관,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u><삭제></u>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그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운영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를 해당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 제8조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현행	개정안
<u><신 설></u>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u>제8조3(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u>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공원, 하천, 공공기관,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자전거의 펌크, 림 교정 및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할 경우 그 비용은 무료로 하되, 그 수리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이용자는 그 부품의 원가를 부담한다.
<u><신 설></u>	<u>제8조4(무단방치 자전거 처분)</u>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 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다.
<u>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u>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u>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u> ② -----자전거 수리센터-----.
<u>제15조(위탁운영)</u> ① 군수는 자전거주차장, 군민자전거,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u>제15조(위탁운영)</u> ①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

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

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